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6

July 5,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6.)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 행정예고 5. 31.	• (이슈)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31.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관련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보류 관련 보도 해명 6. 3.	• (이슈)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에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6. 4.	• (이슈) 공정위 부위원장 임명 • (주요내용) 대통령은 2022. 6. 4.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2022. 6. 4. ~ 2025. 6. 3.)으로 임명

이슈	주요 내용
<u>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u> 6. 8.	• (이슈)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관련 고시 시행 • (주요내용)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6. 8.부터 시행
<u>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u> 6. 9.	• (이슈)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 개최
<u>공정거래 자율준수 심포지엄 개최</u> 6. 9.	• (이슈)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 주최, 조정원이 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됨
<u>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u> 6. 13.	• (이슈) 사건절차규칙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u>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u> 6. 20.	• (이슈)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온라인 참석 • (주요내용) 공정위 대표단은 6. 20.부터 6. 24.까지 진행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u>공정위, 플랫폼 규제 소관부처 관련 해명</u> 6. 20.	• (이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관부처 •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u>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u> 6. 21.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7. 11.까지 행정예고
<u>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u> 6. 27.	• (이슈) 유통 대리점 분야 표준 계약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2022년 지주회사 현황 및 분석 공개 6. 28.	• (이슈) 2022년 지주회사 현황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2021. 12. 말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
II. 주요 소식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과징금 상한액 상향 검토 5. 29.	• (이슈) 기술 탈취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힘
권익위, 제주 추가 배송비 부담 완화 권고안 발표 5. 31.	• (이슈) 섬 지역 추가 배송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권익위는 제주 등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완화를 위해 공정위에게 추가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공정위 고시에 위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촉구 6. 3.	• (이슈) 납품단가 연동제 •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강조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증가 6. 5.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증가 • (주요내용) 2021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커머스 업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 6. 7.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마련 • (주요내용)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만들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협의를 마쳤고, 각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금 실태조사 착수 6. 8.	• (이슈) 프랜차이즈 가맹금 실태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6. 7. ‘업종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실태 파악을 통한 가맹시장 건설행 제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 조사 기간 급증 6. 13.	• (이슈) 공정위 직권조사 기간 장기화 추세 • (주요내용) 공정위가 직권조사한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근 5년 동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조사권 통제 논의 필요성 대두 6. 14.	• (이슈) 공정위 행정조사권에 대한 절차적 통제 논의 • (주요내용) 새 정부 들어 사실상 강제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던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반에서 대두되고 있음
정부,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형량 축소 및 사익편취 심사 지침 정비 6. 16.	• (이슈)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및 사익편취 규제 • (주요내용) 새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 및 사익편취 규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힘
공정위, 가격 담합 집중 단속 예고 6. 16.	• (이슈) 가격 담합 단속 • (주요내용)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담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힘
정부, 공정거래 관련 경제정책방향 발표 6. 16.	• (이슈) 새 정부 경제정책 • (주요내용) 새 정부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플랫폼기업 민간자율규제,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전속고발제 합리적 운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함
정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6. 22.	• (이슈)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 (주요내용) 과기부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 제고 계획을 병행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제3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6. 24.	• (이슈) 제3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 (주요내용)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3회 공정경쟁포럼'이 개최되어,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논의
정부, 정유업계 담합 집중 단속 6. 27.	• (이슈) 정유업계 담합 조사 • (주요내용)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힘
공정위, 44개 규제 개선 과제 선정 및 완화 추진 6. 29.	• (이슈) 규제 개선과제 선정 및 완화 추진 • (주요내용)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개선이 필요한 44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공정위, 10만개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예정 7. 1.	• (이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10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III. 국회 발의법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강민국 의원안) 국회제출

6. 9.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안) 국회제출

6. 14.

- (이슈)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우원식 의원안) 국회제출

6. 27.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송옥주 의원안) 국회제출

6. 28.

- (이슈)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6)

I. 보도자료

1. 공정위,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5. 31.)

- 공정위는 동의를결제도가 도입된 개정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
 - **(목적 규정에 갑을관계 4법 및 방문판매법 포함)** 개정안은 제1조에 동 규칙이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 더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의 동의를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대리점법 등과 관련된 동의를결도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를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동의를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31.)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사전동의 관련 필요 동의 비율 및 방법)** 가맹본부는 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를 얻는 방법은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제13조의5 제1항 및 제2항)
 - **(사전약정 관련 형식 및 내용)**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하며, 해당 약정에는 (i)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ii)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 비율 (iii)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 한도를 모두 포함해야 함(제13조의5 제3항 및 제4항)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경우, 1차 5백만원, 2차 7백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별표5)
-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광고·판촉행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3.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보류 관련 보도 해명 (6. 3.)

- **(언론 보도)** 일부 언론은,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가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고, 과기부의 주관 아래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보도함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인수위원회가 주관한 자리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4.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에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6. 4.)

- 대통령은 2022. 6. 4.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2022. 6. 4. ~ 2025. 6. 3.)에 임명
- 윤수현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약 30년간 공정위 국제협력팀장, 기획재정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거쳐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음

5.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6. 8.)

-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지원센터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 6.8.부터 시행되었음
 - (**대리점 관련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정위가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4, 시행령 별표 1, 종합지원센터 고시)
 -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상향식 제 개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공정위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거래 관행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공정위가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거래방식을 발굴하여 공급업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3)
 -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신속한 위법상태의 해소 및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제24조의2~3)
 - (**보복조치에 대한 배상규정 도입**)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였음(제34조)
 - (**분쟁조정 제도정비**) (i)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고, (ii)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기관의 가맹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음(제13조, 제21조, 운영지침)

6.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6. 9.)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
- 공정위는 금번 설명회에서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통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7. 공정거래 자율준수 심포지엄 개최 (6. 9.)

- 공정위가 주최하고 조정원이 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Compliance Program) 심포지엄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위 심포지엄에서는 ESG 경영과 연계한 CP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됨
 - 제1세션은 ‘ESG 경영 동향 및 CP 도입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최근 ESG 경영 동향과 ESG와 CP의 연계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었고, 제2세션은 ESG 모범규준 사회 부문 내 CP 활용방안, ESG 경영 연계 CP 홍보 및 확산 방안, ESG 평가기업 CP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ESG 경영과 연계한 실질적인 CP 운영방안들이 제시됨

8.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6. 13.)

- **(목적)**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 **(주요 내용)** (i) 공정위 소관 법령에 대한 확인 기회가 제한되어 경험한 불공정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일반 국민을 위해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 추가 (ii)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 제정 (iii) 재신고 서식의 구비 (iv) 위원회 심의 개최 전, 2회 이상의 의견청취절차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v)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 추가(건설입찰의 경우 400억 원, 그 밖에 물품 구매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 40억원에 미달할 것) (vi)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전원회의 심의 기준을 200억원에서 2.5배 상향 조정 및 위반 금액, 거래 규모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전원회의 심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함

9.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6. 20.)

- 공정위 대표단은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및 ‘구매력을 활용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임시중지명령’, ‘기업결합 사후심사’, ‘지역내 소형 개인운송수단 시장의 경쟁’, ‘다른 규제분야에서의 국제공조 방안 및 시사점’, ‘경쟁법 집행과 행동경제학적 접근’ 등에 대하여 논의
- 공정위는 위 회의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 및 집행 경험을 소개하였음

10. 공정위, 플랫폼 규제 소관부처 관련 해명 (6. 20.)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되었으며, 공정위, 방통위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소관부처로 지정되었음은 과도한 규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된 바 없으며, 범 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해명

11.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6. 21.)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7. 11.까지 행정예고 함
 - **(과징금고시 개정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2. 8.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i)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ii)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함
 - **(소매업고시 폐지안)** 소매업고시의 주요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기로 함

12.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6. 27.)

-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매장임차인 및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의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2종과 대리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6종 등 총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음
 - (개정 계약서의 종류)** 유통 분야의 (i) 백화점·대형마트, (ii)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대리점 분야의 (i) 식음료, (ii) 의류, (iii) 통신, (iv) 제약, (v) 자동차판매, (vi)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함. 공정위는 최근 제정된 나머지 12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올해에 마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유통 분야 계약서 개정 내용)** 매장 임차인이 천재지변, 집합 제한 조치 등의 사유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 (i)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ii) 또한 위 각 사유에 더해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에 이른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 분야 계약서 개정 내용)**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제1급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i)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ii) 또한 위 각 사유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대리점이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iii)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위 개정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13. 공정위, 2022년 지주회사 현황 및 분석 공개 (6. 28.)

- 공정위는 2022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2021. 12. 말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
- (지주회사)** 2021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전년(164개)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 지주회사는 1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되었는데, 신설 사유는 주로 자신 및 지주비율 증가이고(10개),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 및 지주비율 감소(5개) 등임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2017년(130개, 67.0%)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동기간 17% 증가(41개→47개)
- (소속회사)** 소속회사 수는 2,274개로 2,020개였던 전년 대비 약 12.6% 증가
 -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8개, 6.9개, 0.8개로 모두 전년(자 5.5개, 손자 6.2개, 증손 0.7개) 대비 증가
 -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평균 자회사(10.3개→11.4개) 및 손자회사(20.0개→22.4개), 증손회사(2.9개→3.6개)의 수가 모두 증가
 -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 12. 31. 이후 설립·전환한 지주회사 및 기존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여 향후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 현황)**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 3,838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32.7%
 -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65조 8,416억 원(평균 3,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9조 8,131억 원(집단별 평균 1조 7,7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증가(2조 1,598억 원, 10.1%)하였고 평균 부채비율은 동기간 2.6%p 하락하여 200%보다 크게 낮은 상태를 유지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과징금 상한액 상향 검토 (5. 29.)

-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의 법 위반 중대성에 비해 적은 규모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함

2. 권익위, 제주 추가 배송비 부담 완화 권고안 발표 (5. 31.)

- 권익위는 제주 등 섬 지역 추가 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에 권고안을 전달하였고, 특히 공정위에게 추가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공정위 고시에 위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3.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촉구 (6. 3.)

-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 6. 3.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였음
- 다만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아닌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확대, 활성화를 비롯한 하도급법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
-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확산, 세계 공급망 불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가의 불안정 추세 속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현재 양당은 구체적 기준은 상이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를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각 발의한 상태임

4.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증가 (6. 5.)

- 지난 2021. 12. 30. 개정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263개사에서 698개사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5. 이커머스 업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마련 (6. 7.)

-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만들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관련하여 공정위와 모두 협의를 마쳤고, 각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6.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금 실태조사 착수 (6. 8.)

- 공정위는 6. 7. ‘업종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실태 파악을 통한 가맹시장 건선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조사를 통해 (i) 우리나라 가맹시장의 업종(외식, 도소매, 서비스)별 필수품목과 가맹금 수취 형태(차액가맹금, 로열티, 양자 병용)에 대한 실태 파악, (ii) 업종 및 세부업종별 표본 추출 후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내용 분석, (iii) 가맹금 수취 형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매출액 등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및 실제 가맹본부, 가맹점주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임

7.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 조사 기간 급증 (6. 13.)

- 공정위가 직권조사한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정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 2017년 평균 198일이던 직권조사 기간이 2021년 350일로 76% 증가하였고, (ii) 직권조사 착수일로부터 최종 의결일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017년 약 280.8일에서 2021년 545.15일로 94% 증가하였음
- 이러한 심의 지연은 주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절차 관련 취소소송 또는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심의가 중단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조사 착수 단계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위 조사에 대하여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함

8. 공정위 조사권 통제 논의 필요성 대두 (6. 14.)

- 최근 법조계와 학계에서 공정위 조사권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공정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조사 형태이나, 현장진입 저지나 지연, 자료의 은닉 및 폐기, 조사의 거부나 방해에 모두 형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
-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공정위 조사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나 범칙조사제도 등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이래, 새 정부에서 꾸준히 법원과 검찰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의 성격과 절차적 통제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함

9. 정부,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형량 축소 및 사익편취 심사지침 정비 (6. 16.)

- 새 정부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 및 사익편취 규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형벌 규정의 행정 제재 전환 또는 형량의 합리화 추진
 - **(사익편취 규제 심사지침)** 효율성 증대 등 예외 인정 요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이익의 부당성 판단 기준, 거래 규모를 반영한 안전지대 기준 마련

10. 공정위, 가격 담합 집중 단속 예고 (6. 16.)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인 가격 담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i) 관계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지하면 공정위에 제보하여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ii) 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를 감시할 계획임
- 관련하여 정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중간재, 운송 등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1. 정부, 공정거래 관련 경제정책방향 발표 (6. 16.)

- 새 정부는 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중 공정거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플랫폼 자율규제)** 플랫폼 기업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기구 및 이를 지원할 플랫폼 협의회(기재부, 과기부, 공정위, 방통위,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 설치
 -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해 관련 행위 모니터링
 - **(전속고발권 운용)**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객관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
 - **(형벌조항 축소)**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 완화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하반기 중 납품단가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 아울러 조정협의제도 개선을 통한 조정협의 활성화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 경제규모의 증가를 고려하여 규제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조정
 - **(대기업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향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

12. 정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6. 22.)

- 과기부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 제고 계획을 병행할 것”이라며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 정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기구를 구성하고 범 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 협의체’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함

13. 제3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6. 24.)

- 지난 6. 24.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3회 공정경쟁포럼’이 개최되어,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
- 위 포럼에서 (i) 내부거래에 대하여 경쟁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성장을 저해되고,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이 간과되고 있으며, (ii) 규제가 획일적이다 보니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iii)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부당성’, ‘정상가격’ 등 모호한 요건이 있어 기업이 사전에 내부거래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예외적인 허용사유 역시 요건이 엄격해 실제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14. 정부, 정유업계 담합 집중 단속 (6. 27.)

-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휘발유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 담합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함
-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힘

15. 공정위, 44개 규제 개선 과제 선정 및 규제 완화 추진 (6. 29.)

-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개선이 필요한 44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주요 내용) (i)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업무영역과 온라인배송 시장이 중복되지 않고 규제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기간 중 온라인 배송 업무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ii) 자체 물류센터 보유를 조건으로 함에 따라 소규모업체의 진출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부처·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을 완화할 예정임

16. 공정위, 10만개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예정 (7. 1.)

- 공정위는 7. 27.까지 1만 개 원사업자(원청업체), 8. 29.부터 9. 23.까지 9만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힘
- 조사 대상 원사업자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제조나 용역업종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부 포함됨
- 조사 내용은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 정도 등으로,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 협상 활용 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 관련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함

III. 국회 발의법안

1.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강민국 의원안) 국회제출 (6. 9.)

-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거래 당사자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제도화(안 제3조의6 신설 등)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안) 국회 제출 (6. 14.)

-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안 제21조 제1항 제8호)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3.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우원식 의원안) 국회제출 (6. 27.)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림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시 가맹희망자의 손해배상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가맹본부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규정(안 제35조의2)을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4.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송옥주 의원안) 국회제출 (6. 28.)

-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이용한 다이어트·성형·미용·의류 광고가 확산되어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현방식의 부적절’ 등의 경우만 모니터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한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보정한 표시·광고에 대하여서도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는(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